

## 고용보험제도에 관하여

- 일본에는 정부가 관장하는 강제보험제도로써 「고용보험」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고용보험」제도는 고용에 관한 포괄적인 제도로써 실업급여, 노동자의 실업예방, 생애를 통한 능력개발 및 복지증진이라는 적극적 고용정책에 기초한 제도입니다. 「불행하게 실업한 사람을 사회전체가 지원한다」는 「보험」제도이기 때문에 실제 실업당할 확률의 고향을 불문하고 고용관계가 있으면 반드시 가입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실업급여 등의 재원은 노동자와 사업주가 납부하는 보험료와 세금에 의해 마련됩니다. 일본에서 고용되면 외국공무원과 외국 실업보험제도의 적용을 받고 있는 것이 입증된 자를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국적(무국적자를 포함)에 불문하고 사업주를 통하여 고용보험피보험자증이 교부됩니다. 피보험자는 고용보험료로서 임금의 ~~0.6%~~(농림수산업, 청주제조업 및 건설업의 사업에 있어서는 ~~0.7%~~)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이 보험료는 임금에서 직접 공제됩니다.
- 사업주가 노동자의 자격취득 절차를 태만히 한 경우에도 노동자는 피보험자 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 피보험자가 이직한 경우, 소정의 요건을 충족하면 실업급여(기본수당)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당했을 때는 고용보험피보험자증 등을 지참하여, 자신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공공직업안정소로 방문해 주십시오.
- 일반 피보험자가 실업한 경우에 있어서 이직일(離職日) 이전 1년간 피보험자기간이 6개월 이상이면 원칙적으로 4주간에 1회 기본수당이 지급됩니다.
- ~~조정의 급부일수는 일반 이직자(정년퇴직자나 자기의사로 이직한 자 등)의 경우 90일~180일, 특정수급자격자(도산·해고 등에 의해 재취직의 준비를 할 시간적 여유없이 부득이 이직된 자)는 90일~330일이 됩니다.~~
- ~~또한 단시간노동 피보험자(주의 소정노동시간이 30시간미만(20시간이상)의 단시간 근로자)인 일반 피보험자가 실업한 경우에는 피보험자 기간의 계산, 임금일액 및 급부일수에 관한 특례가 있습니다.~~

① 기본수당의 연령별 상한액

(2001년 8월 1일 현재)

연령구분	임금일액상한액	기본수당일액상한액
~29세	14,590 엔	8,754 엔
30세~44세	16,210 엔	9,726 엔
45세~59세	17,840 엔	10,704 엔
60세~64세	19,450 엔	9,725 엔

② 기본수당의 급부율(60세미만)

(2001년 8월 1일 현재)

임금일액	급부율	기본수당일액
2,160 엔 ~ 4,250 엔 <sup>(주)</sup>	80%	1,728 엔 ~ 3,400 엔
4,250 엔 ~ 10,280 엔	80% ~ 60%	3,400 엔 ~ 6,168 엔
10,280 엔 ~ 17,840 엔	60%	6,168 엔 ~ 10,704 엔

(주): 2,160~4,259 엔의 임금일액은 단시간노동 피보험자가 실업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60~64세의 실업자에 관해서는 임금일액 10,280 엔~13,300 엔의 경우 급부율이 50~60%까지 차감(遞減)하고 13,300 엔이상인 경우에는 급부율이 50%가 됩니다.

③ 소정의 급부일수

- 일반 이직자(정년퇴직자나 자기의 의사로 이직한 자 등)

이직시 등의 연령	피보험자 있던 기간	1년미만	1년이상 5년미만	5년이상 10년미만	10년이상 20년미만	20년이상
		전 연령 공통	90 일 (90 일)	90 일 (90 일)	120 일 (90 일)	150 일 (120 일)
취직 공란자	45세미만 (30세미만)	150 일 (150 일)	300 일 (240 일)			
	45세이상 65세미만 (30세이상 65세미만)	150 일 (150 일)	360 일 (270 일)			

( )내는 단시간노동 피보험자에 해당하는 일수입니다.

- 특정수급자격자(도산·해고 등에 의해 재취직의 준비를 할 시간적 여유없이 부득이 이직된 자)

이직시 등의 연령		피보험자 있던 기간	1년미만	1년이상 5년미만	5년이상 10년미만	10년이상 20년미만	20년이상
		30세미만	90일 (90일)	90일 (90일)	120일 (90일)	180일 (150일)	( )
30세이상 45세미만	90일 (90일)	180일 (150일)		210일 (180일)	240일 (210일)		
45세이상 60세미만	180일 (180일)	240일 (210일)		270일 (240일)	330일 (300일)		
60세이상 65세미만	150일 (150일)	180일 (150일)		210일 (180일)	240일 (210일)		
취직 공란자	45세미만 (30세미만)	150일 (150일)	300일 (240일)				
	45세이상 65세미만 (30세이상 65세미만)	150일 (150일)	360일 (270일)				

( )내는 단시간노동 피보험자에 해당하는 일수입니다.

**특정 수급자격자의 판단기준**

**I. 「도산」 등에 의해 이직한 자**

1. 도산(파산, 민사재생, 회사갱생 등 각 도산절차의 신청 또는 어음거래의 정지 등)에 따라 이직한 자
2. 사업소의 대량 고용변동신고(1개월에 30인 이상의 이직을 예정) 후 이직한 자 및 해당 사업주에게 고용된 피보험자의 3분의 1 이상이 이직한 경우 이직하였기 때문에 이직한 자
3. 사업소의 폐지(사업활동 정지후 재개의 전망이 없는 경우를 포함)에 따라 이직한 자
4. 사업소의 이전에 의해 통근이 곤란해졌기 때문에 이직한 자

**II. 「해고」 등에 의해 이직한 자**

1. 해고(자신이 책임져야 할 중대한 이유에 의한 해고를 제외)에 의해 이직한 자
2. 노동계약의 체결시에 명시된 노동조건이 사실과 현저하게 달라 이직한 자
3. 임금(퇴직수당을 제외)의 3분의 1 이상의 액수가 지불기일까지 지불받지 못한 월이 2개월이상 계속되어 이직한 자
4. 임금이 종전에 비해 85%미만으로 저하했기(또는 저하하게 됨) 때문에 이직한 자(해당 노동자가 저하의 사실에 관하여 예견할 수 없었던 경우에 한함)
5. 이직 직전 3개월간에 연속해서 노동기준법에 근거하여 정해진 기준에서 규정한 시간(매월 45시간)을 넘는 시간외노동을 했기 때문, 또는 사업주가 위험 혹은 건강장애가 생길 우려가 있다고 행정기관으로부터 지적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소에서 당해 위험 혹은 건강장애를 방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직한 자
6. 사업주가 노동자의 직종전환 등에 즈음하여 당해 노동자의 직업생활 계속을 위해서 필요한 배려를 행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직한 자
7. 기간의 정함이 있는 노동계약(해당 노동계약의 기간이 1년 이내인 것에 한함)의 갱신에 의해 3년이상 계속하여 고용되기로 한 경우에 있어서 해당 노동계약이 갱신되지 않아 이직한 자
8. 상사(上司), 동료 등으로부터 고의적인 배척 또는 현저한 냉대 혹은 미움을 받았기 때문에 이직한 자
9. 사업주로부터 직접 혹은 간접으로 퇴직하도록 권을 받음으로 인해 이직한 자(종래부터 마련되어 있는 「조기퇴직우대제도」 등에 자원하여 이직한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않음)
10. 사업소에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이 3개월이상 계속되어 이직한 자
11. 사업소의 업무가 법령을 위반했기 때문에 이직한 자

· 이 리플릿은 「고용보험」제도가 어떠한 것인가 이해하시도록 작성되었습니다. 이 리플릿은 제도의 개략을 알리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법제도 전체를 정확히 기술한 것은 아닙니다. 자세한 내용에 관해서는 가까운 공공직업안정소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용보험의 실업급부를 받으려고 하는 분에게

### 1. 실업급부(기본수당)를 지급받을 수 있는 분

- (1)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이직하여 다음의 ① 및 ②에 해당하는 일반 피보험자 및 단시간 노동피보험자에 대하여 기본수당이 지급됩니다

또한 기본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일수는 이직일에 있어서의 「이직이유」 「피보험자였던 기간」 및 「피보험자 구분」 등에 의해 결정됩니다.

- ① 공공직업안정소(이하 「안정소」라 함)를 방문하여 구직신청을 하고 취직하려는 적극적인 의사가 있으며, 언제라도 취직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나 안정소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직업을 갖을 수 없는 「실업상태」에 있을 것.

- ② <일반 피보험자의 경우>

이직일 이전 1년간에 임금지불의 기초가 된 일수가 14일이상인 월이 통산 6개월이상이고 또한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있던 기간이 만 6개월이상일 것.

<단시간노동 피보험자의 경우>

이직일 이전 1년간에 단시간노동 피보험자였던 기간과 1년간을 합산한 기간에서 임금지불의 기초가 된 일수가 11일이상인 월을 통산하여 12개월이상 이고 또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던 기간이 만 12개월이상일 것.

(주): 이직일 이전에 피보험자 구분의 변경이 있었던 분이나 피보험자였던 기간이 1년미만인 분은 「피보험자 기간」의 계산이 ①, ②와 다를 수 있습니다.

- (2) 고용보험의 수급기간은 원칙적으로 이직한 날의 다음 날부터 1년간(소정급부일수 330일인 분은 1년과 30일, 360일인 분은 1년과 60일)입니다만, 그 기간중에 병, 부상, 임신, 출산, 육아 등의 이유로 인해 계속하여 30일이상 일할 수 없게 되었을 때는 그 일할 수 없게 된 일수만큼 수급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단, 연장할 수 있는 기간은 최대 3년간입니다.

또한, 소정급부일수 330일 및 360일인 분이 연장할 수 있는 기간은 각각 최대한 3년-30일 및 3년-60일이 됩니다.

이 조치를 받으려고 하는 경우에는 상기의 이유로 인해 계속하여 30일이상 직업을 가질 수 없게 된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1개월이내에 주소 또는 거소(居所)를 관할하는 안정소에 신고하여야 합니다(대리인 또는 우편접수도 가능합니다.).

**2. 지급받기 위한 절차 등**

(1) 이직후 여러분의 주소 또는 거소(居所)를 관할하는 안정소에 신속하게 구직신청을 해주십시오. 이때 다음의 것을 지참하여 주십시오.

- ① 고용보험피보험자이직표  
기본수당의 지급자격을 결정할 때 중요한 서류이기 때문에 기재내용에 잘못이 있는지 잘 확인해 주십시오. 이직표는 이직표-1 및 이직표-2의 2매가 한 세트로 되어 있습니다.
- ② 고용보험피보험자증
- ③ 인감도장  
인감도장이 없는 경우에는 안정소에 상담하여 주십시오.
- ④ 주소 또는 거소(居所) 및 나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주민표, 운전면허증, 외국인등록증명서 등 관공서가 발행한 서류입니다.
- ⑤ 최근 사진  
1매(세로 3cm, 가로 2.5cm의 정면상반신의 사진입니다)

(2) 구직신청을 한 후, 안정소로 방문하여 실업인정을 받아 주십시오. 실업의 인정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기본수당이 지급됩니다.

단, 구직신청후 실업상태의 7일간은 기본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이것을 「대기」라고 합니다.

또한, 자신이 책임져야 할 중대한 이유로 인한 해고, 또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자신의 형편으로 인해 퇴직한 경우는 대기기간 만료후에도 3개월간은 기본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이것을 「급부제한」이라고 합니다.

(3) 실업인정과 기본수당의 지급은 원칙적으로 4주에 1회 행해집니다.

(4) 부정수급

허위 기타 부정한 행위로 기본수당 등을 받거나 또는 받으려고 한 경우에는, 이후 기본수당 등을 받을 수 없게 되는 것은 물론 그 반환을 명령받게 됩니다. 또한 반환을 명한 부정수급 금액과는 별도로 직접 부정행위에 의해 지급을 받은 액수에 상당하는 액수 이하의 금액의 납부를 명령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고용보험제도의 내용이나 절차에 관해 불분명한 점이 있으면 무엇이든 안정소의 직원에게 문의해 주십시오.

## 실업 등 급부를 수급하는 분들에게

### 1. 고용보험 실업급부의 취지

고용보험의 실업급부(기본수당)는 피보험자가 이직한 경우에 생활의 걱정을 하지 않고 새로운 일을 찾는데 전념하여 하루라도 빨리 재취직할 수 있도록 급부를 행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직하여 바로 취직한 사람, 병이나 부상, 임신, 출산, 육아 등으로 인해 바로 일할 수 없는 사람 등은 실업급부를 받을 수 없습니다.

### 2. 기본수당의 금액과 일수

여러분이 받을 수 있는 실업급부를 기본수당이라고 합니다.

기본수당의 일당은 원칙적으로 이직하기 직전 6 개월 임금의 1 일당 금액의 약 60%~80%(60~64 세의 분에 관해서는 50~80%)입니다만, 1 일 최고액은 10,704 원(2001년 8월 1일 현재)입니다.

기본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최대한의 일수는 이직일에 있어서「피보험자였던 기간」 「피보험자 구분」 등에 따라 ①의 표와 같이 정해지고 이것을 소정급부일수라고 합니다.

단, 특정 수급자격자에 관해서는 ②의 표와 같이 이직일에 있어서 「연령」 「피보험자였던 기간」 및 「피보험자 구분」에 의해 소정급부일수가 결정됩니다.

특정 수급자격자란 이직이유가 도산·해고 등에 의해 재취직의 준비를 할 시간적 여유없이 부득이 이직된 수급자격자이고 이에 해당하는 경우, 기본수당의 소정급부일수가 증가할 수도 있습니다.

#### ① 일반 이직자(정년퇴직자나 자신의 의사로 퇴직한 자 등)

이직시 등의 연령		피보험자 였던 기간		1년미만	1년이상 5년미만	5년이상 10년미만	10년이상 20년미만	20년이상
		1년미만	1년이상 5년미만	120일 (90일)	150일 (120일)	180일 (150일)		
전(全)연령 공통		90일 (90일)	90일 (90일)	120일 (90일)	150일 (120일)	180일 (150일)		
취직근로자	45세미만 (30세미만)	150일 (150일)	300일 (240일)					
	45세이상 65세미만 (30세이상 65세미만)	150일 (150일)	360일 (270일)					

( )내는 단시간노동 피보험자에 해당하는 일수입니다.

② 특정 수급자격자(도산·해고 등에 의해 재취직의 준비를 할 시간적 여유없이 부득이 이직된 자)

이직시 등의 연령		피보험자 였던 기간		1년미만	1년이상 5년미만	5년이상 10년미만	10년이상 20년미만	20년이상
		1년미만	1년이상 5년미만	5년이상 10년미만	10년이상 20년미만	20년이상		
30세미만		90일 (90일)	90일 (90일)	120일 (90일)	180일 (150일)	— ( )		
30세이상 45세미만			90일 (90일)	180일 (150일)	210일 (180일)	240일 (210일)		
45세이상 60세미만			180일 (180일)	240일 (210일)	270일 (240일)	330일 (300일)		
60세이상 65세미만			150일 (150일)	180일 (150일)	210일 (180일)	240일 (210일)		
취직 공란 자	45세미만 (30세미만)	150일 (150일)	300일 (240일)					
	45세이상 65세미만 (30세이상 65세미만)	150일 (150일)	360일 (270일)					

( )내는 단시간노동 피보험자에 해당하는 일수입니다.

### 3. 수급기간

기본수당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은 이직한 다음 날부터 1년간입니다. 단, 소정급부일수가 330일인 분은 1년+30일, 360일인 분은 1년+60일이 됩니다. 이것을 「수급기간」이라고 합니다. 이 기간내의 실업한 날에 대해서는 소정급부일수를 한도로 하여 기본수당이 지급됩니다.

수급기간이 지나면 설령 소정급부일수분을 모두 지급받지 않았더라도 그 이후에는 기본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 4. 지급개시의 시기

여러분이 공공직업안정소(이하 「안정소」라 함.)에 구직신청을 한 날로부터 실업상태에 있었던 날이 통산 7일간을 경과하지 않으면 기본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이것을 「대기」라고 합니다.

또한, 자신이 책임져야 할 중대한 이유로 인한 해고, 또는 정당한 이유가 없이 자신의 사정에 의해 퇴직한 경우는 대기기간 만료후에도 3개월간은 기본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이것을 「급부제한」이라 합니다.



## 5. 실업인정

### (1) 실업인정일

구직신청 및 기본수당에 관한 신청을 마친 후, 원칙적으로 4주에 1회 안정소를 방문하여 「실업인정신고서」를 기입하여 제출하고 실업상태(취직하려고 하는 적극적인 의사가 있고 언제라도 취직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나 안정소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직업을 가질 수 없는 상태)에 있다는 것을 신고합니다. 이 날을 「실업인정일」이라고 하고 이 날에 안정소에 오지 않으면 실업인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 (2) 실업인정

안정소에서는 그 신고를 근거로 하여 여러분이 실업상태였다는 것을 확인한 경우에 이 실업한 날에 대해서 기본수당을 지급합니다. 이것을 「실업인정」이라고 합니다.

인정되는 기간은 원칙적으로 전회 인정일로부터 이번회 인정일의 전일까지 28 일간입니다. 이때 이 28 일간에 아르바이트 등을 하여 일한 날 또는 부업 등을 한 날이 있을 때는 이를 신고해야만 합니다.

일을 한 날에 대해서는 실업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기본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만, 그 일수분(日數分)은 다음회 이후의 인정으로 이월하게 됩니다. 단, 수급기간이 지난 경우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또한 부업의 경우는 부업에 의해 얻은 금액에 따라 감액하여 지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 (3) 기본수당의 지급

기본수당은 안정소에서의 실업인정을 받은 날로부터 약 1 주일 정도며 여러분 명의의 금융기관 보통예금구좌로 입금됩니다. 금융기관의 휴일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만큼 입금이 늦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 6. 수급자격자증

- 통상, 기본수당의 수급신청을 한 후에 「수급자격자증」을 드립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수급에 관한 데이터가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소중하게 보관하여 주십시오.

실업인정일에는 수급자격자증을 반드시 지참하여 주십시오.

## 7. 재취직수당

취직(임시, 파트타임, 시용(試用)기간, 연수기간, 아르바이트 등도 포함)했을 때 또는 취직이 내정되었을 때는 신속히 안정소로 연락하여 주십시오.

취직일 전일까지 기본수당 및 재취직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 (1) 지급요건

다음의 모든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재취직수당」이 지급됩니다.

- ① 취직일 전일까지 실업인정을 받은 후에 취직일로부터 수급기간 만료일까지의 지급 잔여일수가 소정급부일수의 3분의 1 이상이고, 45 일이상 남아 있을 것.
- ② 1 년이상 계속하여 고용될 것이 확실한 안정된 직업에 취직했을 것.
- ③ 「대기」가 경과한 후 취직했을 것.

- ④ 수급자격에 관계되는 이직사유로 인해 「급부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대기」를 경과 후 1개월간에 관해서는 안정소의 소개에 의해 취직했을 것.
- ⑤ 이직전의 사업주(관련사업주를 포함)에게 재고용된 것이 아닐 것.
- ⑥ 「수급자격결정일」 전에 채용이 내정되어 있던 사업주에게 고용된 것이 아닐 것.
- ⑦ 과거 3년이내의 취직에 관하여 「재취직수당」 또는 「상용취직준비금」을 지급받은 적이 없을 것.
- ⑧ 고용보험의 피보험자자격을 취득하고 있을 것.
- ⑨ 신청후 바로 이직한 것이 아닐 것.

(2) 재취직수당의 액수

~~X 재취직수당의 액수는 지급잔일수의 3분의 1에 상당하는 일수에 기본수당 일당을 곱한 액수(1엔미만의 우수리는 바림)가 됩니다.~~

~~또한 지급잔일주는 취직일 전일까지의 실업인정을 받은 후 나머지의 일수를 말합니다.~~

(3) 신청절차

재취직수당의 신청은 「재취직수당 지급신청서」에 「수급자격자증」을 첨부하여 취직한 날의 다음 날로부터 1개월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또한, 신청기간이 지나면 지급받을 수 없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 재취직수당의 지급

안정소에서는 신청받은 후, 상기(1)의 내용을 조사확인하여 약 1개월반 후에 재취직수당을 지급할지 여부를 통지합니다.

지불은 지급결정후, 여러분의 계좌로 입금됩니다.

8. 부정수급

실업 등 급부(기본수당, 재취직수당, 하기 9(3)의 상병(傷病)수당 등)의 지급을 받는 절차 중에서 안정소에 제출하는 서류에 기재하는 내용을 허위로 하여 실업 등 급부를 받거나 받으려고 한 경우(예를 들면 실업인정시 취직·취로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등 입니다)는 부정수급으로서 엄한 처분이 행해집니다.

이 부정수급의 처분에 있어서는 이후 실업 등 급부를 받을 수 없게 되는 물론 부정하게 수급한 금액에 관해서 반환 혹은 부정하게 수급한 액수의 2 배의 금액을 반환하게 됩니다.

9. 기타

(1) 취직이 결정되었을 때

실업급부를 수급중에 취직이 결정되었을 때는 채용연월일 등을 안정소에 신속하게 연락하여 주십시오.

(2) 실업인정일의 변경

실업인정일에 안정소에 오지 않는 경우는 실업인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단, 취직, 면접, 질병·부상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실업인정일에 올 수 없는 경우는 이 인정일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실업인정일을 변경하는 경우는 다음 인정일 전일까지 안정소로 신고해 주십시오.  
 이 때 채용증명서, 면접증명서 등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실업인정일에 올 수 없는 경우에는 사전에 안정소로 연락하여 주십시오.

(3) 상병(傷病)수당

안정소로 구직신청을 한 후,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15일이상 계속되어 취직할 수 없을 때는 기본수당은 지급되지 않지만 그 대신에 소정급부일수의 범위내에서 같은 액수의 「상병(傷病)수당」이 지급됩니다.

상병(傷病)수당의 지급을 받으려고 할 때는 질병 또는 부상이 치료된 후 최초의 인정일까지 「상병(傷病)수당 지급신청서」에 「수급자격자증」을 첨부하여 안정소에 제출하여 주십시오.

질병 또는 부상으로 장기간 안정소로 올 수 없을 때는 전화 또는 대리인이라도 괜찮으니 빨리 안정소로 연락한 후 지시를 받아 주십시오.

(4) 수급기간의 연장

고용보험의 수급기간은 원칙적으로 이직한 다음 날부터 1년간(소정급부일수 330 일인 분은 1년 30일, 360일인 분은 1년 60일)입니다만 그 사이에 질병, 부상, 임신, 출산, 육아 등의 이유로 인해 계속하여 30일이상 일할 수 없게 되었을 때는 그 일할 수 없게 된 일수만큼 수급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단, 연장할 수 있는 기간은 최대한 3년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소정급부일수 330일 및 360일인 분이 연장할 수 있는 기간은 각각 최대한 3년-30일 및 3년-60일이 됩니다.

이 조치를 받으려고 하는 경우에는 상기의 이유로 인해 계속하여 30일이상 취직할 수 없게 된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1개월이내에 주소 또는 거소(居所)를 관할하는 안정소로 신고해야만 합니다(대리인 또는 우편접수도 가능합니다.).

☆ 고용보험제도의 내용이나 절차에 관해 불분명한 점이 있으면 무엇이든 안정소의 직원에게 문의하여 주십시오.